

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74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04. 1. 28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
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(2003. 12. 18, 대통령령 제18161호)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경비를 조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의정활동비 지급경비 조정
 - 의원의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“월 700,000원” 을
⇒ “월1,200,000원” 으로
 - 보조활동비 “월 200,000원” 을 ⇒ “월300,000원” 으로 함

3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4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32조(의원의 의정활동비)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(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)

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중 “월 700,000원” 을 “월 1,200,000원” 으로, “월 200,000원” 을 “월 300,000원” 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의원의 의정 자료수집·연구비는 월 700,000원 으로 하고 그 보조활동비는 월 200,000원으로 하며, 매월 충청 북도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 한다.	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----- ----- 월 1,200,000원 ----- 월 300,000원 ----- ----- -----			

관 련 법 규

□ 지방자치법

제32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

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

1. 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
2.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시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
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15조(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)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, 회기수당(원격지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)의 지급기준은 별표 6,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

[별표 5]

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

구 분	의정활동비 지급범위	
	의정자료수집·연구비	보조활동비
시·도 의회의원	1,200,000원 이내	300,000원 이내
시·군자치구의회의원	900,000원 이내	200,000원 이내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, 회기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

③<생 략>